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9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승수 · 김기웅
강선영 · 강명구 · 박형수
박대출 · 서천호 · 한기호
김석기 · 김상훈 · 이달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

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5항 신설).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(보조 및 용자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(보조 및 용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하 는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지사 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 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 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</u>